

의안 번호	제3375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11월 16일 한종우 의원  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26일  
다. 상정일자 : 2023년 11월 27일  
라. 의결일자 : 2023년 11월 27일

### 2. 제안이유

-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필수적으로 설치 · 사용하고 있는 철파이프, 천막 등의 구조로 된 부속창고의 내구성 및 화재 취약,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반영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토록 개정하고자 함.
- 공동주택 경비 · 청소노동자의 노동 권익을 향상하고자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토록 개정하고자 함.
- 학교시설,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용 · 관리를 위하여 학교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토록 개정하고자 함.
-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각종 사고 우려가 있어 유지관리가 어려운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설정하여 합리적인 가설건축물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-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발생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 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단열재가 없는 강판 재질의 가설건축물 허용 추가(안 제20조제2항제11호)
- 나.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 추가(안 제20조 제2항제12호)

- 다.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허용 추가(안 제20조제2항제13호 및 제14호)
- 라.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기준 규정(안 제20조제3항)
- 마.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변경(안 제3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)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가설건축물(부속창고) 설치 시 반영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강판 재질을 사용하고,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휴게권 및 노동 권리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하고, 학교·유치원·어린이집의 이동에 필요한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며,
-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에 한하여 존치기간 연장 횟수 기준을 규정하고,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(2023. 9. 12.)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#### 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# 6. 토론요지 : 생략

#### 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#### 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# 9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#### 10. 주문사항 : 없음

#### 11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